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시 대통령의 즉시 임명 등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0호)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70호)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81호)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51호)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시 대통령의 즉시 임명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6
2.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15
3.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13조제2항 등)	18

I. 제안경위

【최민희의원안(2200140)】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38인

나. 발 의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김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최민희의원안(2200181)】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37인

나. 발 의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11.

【신장식의원안】

가.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민희의원안(220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하고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김현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

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취지나 그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

【최민회의원안(2200181)】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신장식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1.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시 대통령의 즉시 임명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4건의 개정안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임명 절차 과정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임.
- 최민희의원안(2200140)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위원 중에서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위원을 즉시 임명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3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상임위 추천 위원을 즉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항 신설).
- 김현의원안은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하여 추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없더라도 추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안 제5조제4항 신설),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 최민회의원안(2200181)은 방통위의 회의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 신장식의원안은 김현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 결원 발생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최민회의원안(2200140)】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 등) ①·② (생략)	제5조(임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김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 등) ① (생 략)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5조(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하여야 한다.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이내에----- ----- ----- -----.

【최민희의원안(2200181)】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	제13조(회의) ① ----- 제4조 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

현 행	개 정 안
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장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회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u>지체 없이</u>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30일 이내</u>----- ----- -----.

나. 검토 의견

-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1항¹⁾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법 제5조제2항²⁾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되 1인은 여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2인은 야당의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함.
- 이러한 임명 구조로 인하여 방통위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에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음.
- 다만, 현재 6기 방통위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 다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음.
 - 2023년 3월 30일에 국회에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부적격에 대한 유권해석 중이라는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었고,³⁾ 이상인부위원장(대통령)이 2023년 5월에 임명되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3) 최민희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이력이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제4조에 따른 “방송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었는데, 당시 5기 방통위원인 김현위원(더민주), 김효재위원(국힘)과 함께 2023년 8월 23일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되었음.

- 이후 2023년 8월 25일에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어, 이상인 부 위원장과 2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2023년 12월 1일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2023년 12월 29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6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한상혁 위원장(대통령) 2020.8.1. ~ 2023.5.30.	이동관 위원장(대통령)	2023.8.25. ~ 2023.12.1.
	김홍일 위원장(대통령)	2023.12.29. ~ 2026.8.24.
김창룡 위원(대통령) 2020.4.6. ~ 2023.4.5.	이상인 부위원장(대통령)	2023.5.4. ~ 2026.5.3.
안형환 부위원장(국힘) 2020.3.31. ~ 2023.3.30.	최민희 후보자 2023.3.30. 추천, 11.7. 사퇴	
김현 위원(더민주) 2020.8.24. ~ 2023.8.23.		
김효재 위원(국힘) 2020.8.24. ~ 2023.8.23.		

- 이에 따라, 4건의 개정안은 방통위 5인의 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되, 1인은 여당의 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방통위원을 여야가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회 또는 상임위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 또는 상임위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위원 임명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 임명 또는 보궐위원 임명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며,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모두 구성되었을 때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법 제13조제1항4)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는데,⁵⁾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과 같은 취지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방통위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허숙정의원안(의안번호 2125796)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4) 「방통위설치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서울고등법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설치법)제13조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 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 (한겨레, 「법원 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소지”...야 ”의결멈추라“」, 2024.5.27.)

국회의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참고로, 정부 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⁶⁾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⁷⁾, 금융
위원회⁸⁾, 개인정보보호위원회⁹⁾ 등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 중에서 ‘즉시’ 임명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법률 용어상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지체 없이’ 보다 강한 것으로, ‘지체 없이’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¹⁰⁾
- 종합해보면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
만으로 중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해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위촉
하거나 의사정족수를 5인으로 하려는 입법취지 및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명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의 취지와 함께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
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
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
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10) 법제편람, p.860.

의사정족수 변경 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 상임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2.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가. 주요 내용

- 김현의원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김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 ① ~ ④ (생략) ⑤ 국회는 <u>위원장이</u>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위원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u> ----- -----.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방통위에서 직무대행이 이루어진 현황을 살펴보면, 5기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2023년 5월 30일)된 후인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였고,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였음.

-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의 방통위원은 김효재 위원, 이상인 부위원장, 김현 위원 3인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¹¹⁾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였음.

○ 김현의원안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한 안건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방통위의 위원 구성 취지나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헌법 제65조제1항¹²⁾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김현의원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한 안건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1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헌법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지속되고 있고, 방통위원의 구성 취지나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와 헌법에서 개별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3.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13조제2항 등)

가. 주요 내용

- 김현의원안은 방통위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제2항), 신장식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현행법은 제13조제1항13)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14)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4인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장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③ ~ ⑦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만,</u> <u>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u> <u>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u> <u>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재 6기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 다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통위의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음.
- 이는 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임.
- 이에 따라, 2건의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각각 재적위원 3인 또는 4인 이상의 의사정족수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해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현행법이 상임위원을 5인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명 2인, 여야 교섭단체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현행법 제13조제1항¹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¹⁶⁾

15) 「방통위설치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조승래의원안(의안번호 2123599)에 대해서, 의사정족수 도입 시 회의 개의회가 제한되므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국민 권익과 관련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조승래의원안(의안번호 2123599)은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 참고로, 정부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4조 및 제73조17)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

16) 서울고등법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설치법)제13조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 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한겨레, 「법원 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소지”...야 ”의결멈추라“, 2024.5.27.)

17)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정족수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¹⁸⁾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위원회 등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방송통신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회의)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18)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감사원	「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한편, 의사정족수 4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0461)」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해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 및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려는 내용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현재 의사정족수 4인 신설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046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